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비 (안 제2조 ④항, 제16조 ①항)

- 종합자원봉사센터 → 자원봉사센터로 개정

나. 기초자치단체 불필요 조항 삭제 (안 제5조 ①~④항)

-「자원봉사발전위원회」 설치 규정 삭제

다. 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사항 개정 및 신설 (안 제6조의2 ②항 ③항)

- 센터 장 임기 개정 (3년 → 2년)
- 센터 장 해임규정 신설

라. 센터의 조직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8조 ②항, ⑥항)

- 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(위탁기간 3년 → 3년이내)
-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 (위원수 10인 이하 → 15인 이하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2019. 6. 27 심사완료 (기획감사실-6267)

라. 성별영향평가 : 2019. 6. 28 평가완료 (가족지원과-25857)

마. 입법예고 : 2019. 7. 24 ~ 8. 12. (20일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,

○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개정하고,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자원봉사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